

공사도급계약서

이 공사를 도급함에 있어서 발주자(이하 “갑”이라 함) 와 계약자(이하 “을” 이라함)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별첨 견적서 및 계약 조건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1. 공 사 명 : XXXXX LPG 공급시설 공사 (XXTON 1기,XXXX 2기)
2. 공 사 장 소 : 공장 내
3. 공 사 기 간 : 2022 년 XX 월 XX 일 ~ 2022 년 XX 월 XX 일
4. 계 약 금 액 : 일금 만 원 정 (₩000,000,000) -부가세별도-
5. 지 체 상 금 율 : 1000 분의 1
6. 하자 보증 기간 : 1년
*(단 , 천재지변 및 사용자부주의에 대한 하자일 경우 해당없음.)
7. 대금 지불방법 : 선금금(총계약금의30%)
잔 금(총계약금의 70% , 시운전 후 즉시 지급한다.)

계약 체결 일자 : 2022 년 XX 월 XX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이 사 :

“도급인”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748
상 호 : 주식회사에이치디에너지바이스
대 표 이 사 : 김 응 정 (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 조(공사의 시공)

수급인(이하 공급자 또는 계약자)는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면(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산출내역서, 현장설명서, 예정공정표, 그 외 도급인(이하 구매자 또는 발주자)와 공급자의 합의로 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한다.

제 2 조(관련공사와의 조정)

- 1)수급인은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도급인과 협의하여 기간, 내용,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2)수급인은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성에 협력한다.

제 3 조(감독원)

- 1)도급인은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이하"감독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 2)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가)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 나)계약이행에 있어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협의하는 일
 - 다)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 라)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작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 3)수급인은 감독원의 감독 또는 관리에 있어서 그 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급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도급인에 의한다.
- 4) 충전소 사업자 등 공사장소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하 '충전소 사업자 등')은 갑의 감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공급자는 충전소 사업자 등의 행위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제 4 조(현장대리인)

- 1)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이하"대리인"이라 한다)을 두며 이를 도급인에게 통지한다.
- 2)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인을 대리하여 공사장내에서의 물건의 분실, 사고 등 공사 수행중의 제반사항의 책임을 진다.

제 5 조(종업원 및 고용원에 대한 책임)

수급인은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6 조(노동법상의 책임과 의무)

수급인(또는 공급자)은 도급수행인력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사회보험법령 등 기타 근로관계 법령상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이의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또는 공급자)와 도급수행인력 간의 문제임을 확인하며, 도급인(또는 구매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 7 조(공사재료의 검사)

- 1)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 2)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재료를 사용 전에 도급인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 3)수급인이 불합격된 재료를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급인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가 있으며, 소요된 비용을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4)수급인은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구매자 또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 5)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도급인 또는 감독원의 입회하여 이를 행한다.

- 6)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한 공사재료를 도급인 또는 감독원의 승낙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 7)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은 도급인 또는 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공할 수 없다.
- 8)재료 중 주문에 의해 생산되는 것은 도급인 또는 감독원이 언제든지 그 제작과정에 참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 시기·내용 등 상세는 본 조 다른 항에 준한다.

제 8 조(지급재료)

- 1)도급인은 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 그 제공 시기는 예상공정표에 의하고, 그 인도장소는 WorkScope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 2)전항에 의하여 지급된 재료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속하며 감독원의 서면승낙 없이 반입된 재료를 이동할 수 없다.
- 3)수급인은 도급인 또는 감독원이 지급재료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 4)본 조의 지급재료를 지급 후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5)도급인이 지급한 재료와 기계, 기구 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한다.
- 6)재료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전 서면 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 7)도급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 대체 사용한 재료의 대가는 준공금 지급 시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 8)도급인 또는 감독원은 재료 지급을 수급인 입회하여 검사하여 인도한다.
- 9)수급인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재료를 지체 없이 도급인에게 반환한다.

제 9 조(부적합한 공사)

- 1)도급인은 공급자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면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 2)전항의 경우 부적합한 시공이 도급인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0 조(공사의 변경, 중지)

- 1)도급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 2)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가)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별첨의 공사비 산출내역상(견적서)의 단가로 한다. 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급자는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대금 조정을 도급인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나)계약단가가 없는 신규재료의 단가는 협의에 의한다.

제 11 조(응급조치)

- 1)수급인은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도급인에게 통보한다.
- 2)도급인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 3 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3)전 1), 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수급인에게 응급조치발생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도 내에서 도급인이 부담한다.

제 12 조(검사 및 인도)

- 1)수급인은 공사의 완공/부분완공 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도급인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검사 후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2)수급인은 전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 3)수급인은 도급인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한다.
- 4)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고 공사장을 정돈한다.

제 13 조(손해배상)

수급인은 공사 중 목적물이 도급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공사의 목적물이나 도급인 또는 제 3 자에게 손실이 있을 경우 이를 배상한다.

제 14 조(부분사용)

- 1)도급인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 2)전항의 경우 도급인은 선풍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한다.

제 15 조(대금지급)

- 1)수급인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지급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도급인은 기성부분 금액 또는 준공금을 시운전 완료 되자마자 지급한다.
- 3)도급인은 수입자재 분의 대금 지급은 수입 통관전 지급한다.
- 4)도급인은 수입자재 금에 대한 대금 지불을 수급자의 동의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다.
- 5)도급인은 전 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급자에 대하여 노임지불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노임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지급할 대금 중에서 노임 해당 분을 공제하여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 16 조(하자담보)

- 1)수급인은 전공사의 준공 후 1 년간 하자의 보수를 담보한다.
- 2)수급인은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현금 또는 서울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도급인에게 납부한다.
- 3)수급인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 4)수급인은 전항의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전 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 5)전 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도급인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 17 조(이행지체)

- 1)수급인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에 정한 금액에 따른 배상금(이하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 2)전 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것에 한한다.
- 3)다음 각 호의 경우로 공사가 지체되었을 때에는 지체상금의 부과를 면제한다.
 - 가)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경우
 - 나)수급인이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지급재료의 공급이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한 경우
 - 다)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4)도급인은 지체상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기타의 예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 5)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하며 이 경우 도급인은 서면 통보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18 조(계약해제, 해지, 제재)

- 1)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서면통지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가)제 6 조(노동법상의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수행인력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나)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다)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 라)수급인이 본 계약의 제반 조건을 위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마)수급인이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처분을 받았을 때
 - 바)수급인의 파산, 지급불능 등의 상태로 재정상황이 악화된 경우
- 2)전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 3)도급인이 전 1)항에 의거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 발생한 도급인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수급인은 그 초과 금액을 즉시 도급인에게 지급한다.
 - 4)수급인은 본 조에 의거 계약의 해제, 해지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가)해약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한다.
 - 나)도급인으로부터의 대여품은 지체 없이 도급인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과 함께 반환한다.
 - 5)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사전 서면통지로 본 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 가)설계변경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액의 1/3 이상을 감축한 때
 - 나)공사중지기간이 총 공기의 1/2 이상일 때

제 19 조(안전관리)

- 1)수급인은 법으로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만약 수급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도급인이 보험료 및 기타 경비를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수급인의 공사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또한 수급인은 재해의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 2)수급인은 전항의 금액 외에 재해로 인한 보상비 등 민.형사상의 모든 요구 및 부대비용에 관하여 각자 귀책사유의 범위 내에서 책임지기로 한다. 수급인과 공급인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 3)수급인은 공사 수행 중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도급인에게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한다.
- 4)안전관리자는 공사 현장 내 연관 작업, 주변 작업등 내용을 파악하고, 가상의 돌발 사태를 대비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안전관리자는 공사 수행 중 위치 이탈 시 공사감독에게 사전승인을 득한 후 후임 안전관리자를 임명하고 현장현황, 주변상황, 위해 요소, 복귀 시간 등을 인계할 의무가 있다.
- 6)공급자는 공사 수행 중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사고발생 즉시 도급인에게 통보하고, 24 시간 이내에 사고의 보고 및 대책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도급인이 요구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20 조(제 3 자 양도 등 금지)

- 1)수급인은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재위임, 하도급 할 수 없다.

제 21 조(보안요구사항)

- 1)수급인은 본 계약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 도급인에 별도 양식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임직원이 도급인의 사옥에 출입하거나 도급인의 내부 네트워크망에 접속하는 경우 도급인의 보안규정 및 기타 보안관련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 2)수급인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밀정보를

공사계약일반조건

-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비밀정보를 취급하게 할 경우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실을 주지시키고 본 계약상 규정된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이러한 자신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도급인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3) 수급인은 도급인에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급인의 보안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수급인은 본 용역을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주기적인 정보보호 교육(연 1회이상 권장)을 시행하고 도급인의 정보유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보안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용역을 수행하는 임직원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5) 본 계약 제19조에 따라 재위탁,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급인은 재위탁, 하도급 계약에 본 조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6)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용역수행자의 근무위치 기록 요망]에 한정하여 도급인의 사옥 및 기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장비 및 매체 반출입 통제, 인원의 출입통제 등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7) 수급인이 본20조를 위반하는 경우, 수급인은 그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자산의 반환, 사옥 또는 기지에서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2 조(합의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의 합의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별첨] 공사비 산출내역(견적서) , 현장배치도 , WORKSCOPE , 예상공정표
--- 이하 여백---